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국 유 재 산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구윤철 (재정경제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일정 규모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및 매각 예정가격 감액요건을 정비하는 등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(영 제18조제2항제1호다목)

최초 매각 예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 매각 및 매각가격 감액을 결정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.

나.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정비(영 제40조제3항제17호, 제25호, 제25호의2)

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로 매각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고,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는 조항을 정비함.

다. 국유재산 매각 예정가격 감액 요건 정비(영 제42조제3항)

국유재산의 매각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건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

을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함.

라. 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(영 제52조의2 신설)

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
위해 매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16. ~ 4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다. 최초 매각 예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(증권은 제외한

다)에 대한 법 제48조에 따른 매각 및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

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

제40조제3항제17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
은 항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5.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에 비하여

국가에 명백히 유리한 경우

25의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에 대하여

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
제42조제3항 중 “일반재산”을 “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”으
로, “금액만큼”을 “금액의 범위 내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
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으로서 재정경
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

2.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을
매각하는 경우

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2(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 예정가
격이 1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(증권은 제외한다)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
심의하기 위하여 매각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매각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
직원,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
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
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매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
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분과위원회) ① (생략)	제18조(분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(이하 “분과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부동산분과위원회 가. · 나. (생략)	1. ----- 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다. 최초 매각 예정가격이 50 억원 이상인 국유재산(증 권은 제외한다)에 대한 법 제48조에 따른 매각 및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
다. (생략)	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
2. · 3. (생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40조(처분의 방법) ① · ② (생략)	제40조(처분의 방법) ① · ② (현 행과 같음)
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. 이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
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.	----- -----.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17. 국유지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	<삭 제>
18. ~ 24. (생 략)	18. ~ 24. (현행과 같음)
25.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	25.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에 비하여 국가에 명백히 유리한 경우
<신 설>	25의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26. ~ 28. (생 략)	26. ~ 28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2조(처분재산의 예정가격) ① · ② (생 략)	제42조(처분재산의 예정가격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	③ -----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----- -----

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 금액의 범위 내에서 ----- -----.
<신 설>	1.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
<신 설>	2.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
④ 삭 제	⑤ ~ ⑪ (현행과 같음)
⑤ ~ ⑪ (생 략)	제52조의2(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(증권은 제외한다)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각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른 매각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,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공무원 또는 위

탁받은 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
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
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매각심의위원
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
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
장등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154